

해상인명구조와 보상체계에 관한 고찰

이 정 원*

차 례

I. 서론

II. 상법상 인명구조에 대한 보상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해난구조의 의의
2. 해난구조에 관한 입법 연혁
3. 인명구조의 의의
4. 상법상 해난구조의 요건과 보상체계
5. 인명구조의 보상체계
6. 상법상 인명구조의 보수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III. 수상구조법상 인명구조의 의의와 보상체계

1. 수난구조종사자명령의 의의
2. 수난구조종사명령의 요건
3. 수상구조법상 인명구조의 보상체계
4. 해난구조료청구권과 수난구조비용청구권의 경합과 조정
5. 수상구조법상 인명구조의 보상체계의 문제점

IV. 결론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접수일자 : 2017. 10. 31. / 심사일자 : 2017. 11. 22. / 게재확정일자 : 2017. 11. 24.

I. 서론

20세기 이후 가속화 되고 있는 조선공업기술의 발달은 선박의 대형화 · 고속화를 견인하고 있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가수요의 증대는 해양레저산업의 발달 및 여가목적의 여객선을 이용한 여행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와 같은 선박의 대형화 · 고속화 및 해양레저수요의 증가는 과거에 인류가 겪어 보지 못한 대규모의 인적·물적손해의 발생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는 일찍이 해상 등에서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관한 규범체계를 모색해 왔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해난구조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들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는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등의 구조를 위해 ‘착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의 선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조자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통한 구조의 장려 및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독특한 규범체계를 형성하였다. 해난구조에 관한 법제의 국제적 통일의 필요성에 따라 브뤼셀 해사법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 on Maritime Law)에서 제정된 「1910년 해상에서의 구원 및 구조에 관한 일부규정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The Brussels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with respect to Assistance and Salvage at Sea 1910, 이하, ‘1910년 해난구조협약’이라고 함)」은 해난(海難)을 당한 선박 내지 적하 등을 의무 없이 구조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해난구조를 장려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위 협약의 가장 핵심적 법리는 소위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No cure - no pay rule)’에 따라 구조자가 해난구조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선박과 적하 등의 재산의 구조가 성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난구조를 위해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하한 경우에도 구조로 인한 유익한 결과(a useful result)가 없으면 구조자는 보수(equitable remuneration)를 청구할 수 없다.¹⁾ 또한 해난구조에 대한 보수는 재산의

1) 1910년 해난구조협약 제2조.

구조가 성공한 경우에만 인정될 뿐,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²⁾ 해난구조협약의 위와 같은 법리는 동 협약을 대체하기 위해 1989년경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주도 하에 제정된 새로운 협약인 「1989년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 1989, 이하, ‘1989년 해난구조협약’이라고 함)」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위 협약들의 주요 내용을 수용한 우리 상법 해상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³⁾

한편 해난구조에 대한 위와 같은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의 대응과는 별개로, 해운실무에서는 해난구조에 관한 표준약관으로서 「로이드 해난구조표준약관(LLOYD'S STANDARD FORM OF SALVAGE AGREEMENT, Lloyd's Open Form)」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⁴⁾ 로이드 해난구조표준약관에 의할 경우에도 구조자에 대한 보수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 원칙”에 따라 물건의 구조에 성공하여 구조의 결과물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가 인정되고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수가 인정되지 않는다.⁵⁾

해난구조의 경우, 인명만의 구조자에 대해 보수의 지급을 부정하는 상법과 위 협약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⁶⁾ 그런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이라고 함)」⁷⁾ 제18조는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 등은 조난된 선박

2) 위 협약 제9조.

3) 우리나라는 1910년 해난구조협약과 1989년 해난구조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상법 해상편에 위 협약들의 주요 내용을 수용하였다.

4) 로이드 해난구조표준약관은 2011년에 개정되었다.

5) 위 약관 D조 참조.

6) 임동철, “해상인명구조와 구조료에 관하여,” 한국해법학회지 제17권 제1호(1995. 4.), 한국해법학회, 8쪽; 신창훈, “현행 국제법상 해상조난자에 대한 지원제공의무의 법적 성격”, 서울국제법연구 제14권 제1호(2007), 서울국제법연구원, 118쪽; Severance, Arthur Alan (2006) "The Duty to Render Assistance in the Satellite Age,"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6 : No. 2 , Article 5. pp. 387-388.

7) 2016년 이전까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서는 「수난구조법」이 규율하고 있었지만,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수상에서의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수상구조법이 기존의 수난구조법을 대체하여 2016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창재, “해난구조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21집 제2호(2017. 8.), 국제거래법학회, 211쪽, 각

등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할 구조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이 수난구조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조). 특히 수상구조법 제18조와 달리,⁹⁾ 동 법 제2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수난구조종사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선박·자동차·항공기·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함으로써 수난구조 등에 관한 종사명령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동 법 제45조). 다만 수상구조법은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수난구조종사명령에 대해 형벌부과를 통한 강제성을 부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수난구조종사명령에 응해 수난구조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법상 해난구조와 수상구조법상 수난구조는 그 법적 근거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그 요건과 효과에 있어 세부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지만, 양 제도 모두 수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 그 입법취지라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다.¹¹⁾ 특히 인명만의 해난구조에 대해 보수의 지급을 부인하는 상법 규정과 달리, 수상구조법상 수난구조의 대상은 조난된 사람 및 선박 등으로서, 수난구조종사명령에 따라 조난된 사람의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도 동 법상 일정한 경제적 보상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인명구조에 관한 상법 규정

주 7) 참조.

8) 수상구조법상 수난구조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동 법 제2조 제4호.

9) 다만 조난된 선박 또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10) 수상구조법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

11) 박용섭, “해난구조법과 수난구조법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19권 제1호(1997. 1.), 한국해법학회, 7쪽.

을 보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하에서는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와 관련하여 상법과 수상구조법의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상법상 인명구조에 대한 보수체계의 당위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수상구조법이 규정하는 수난구조비용의 지급의 의의와 효과 등에 대한 해석론적·입법론적 검토를 간략히 해 보고자 한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법상 해난구조는 구조에 관한 사전 계약 없이 임의로 하는 좁은 의미의 해난구조와 계약에 의한 해난구조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해난구조로 구별되지만, 이 글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인명구조의 보상체계와 관련한 협의의 해난구조와 수상구조법상 수난구조비용청구에 한정하고자 한다.

II. 상법상 인명구조에 대한 보상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해난구조의 의의

상법은 해난구조의 개념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동 법 제882조는 해난구조의 요건에 관해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통해 상법상 해난구조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해난구조란 선박과 적하 기타 물건이 타인의 조력 내지 구조행위가 없으면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에 처한 경우에, 그 선박 등을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구조하는 것을 의미한다.¹²⁾

그러나 최근의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해운실무상 대부분의 해난구조는 사전에 체결된 구조계약에 따라 행해지고(소위 ‘계약구조’), 구조에 대한 의무 없이 임의로 행해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¹³⁾ 상법상 해난구

12) 위의 논문, 8쪽; 임동철, 앞의 논문, 9쪽.

13) 정완용, “개정 상법상의 해난구조규정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2호(2010. 11.), 한국해법학회, 215-216쪽.

조는 후자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해난구조의 실무를 감안하여 계약구조의 경우에도 상법의 해난구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상법 제887조 제1항).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해난구조라고 함은 구조에 관한 의무 없는 자발적 구조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계약구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상법상 해난구조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수의 지급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함과 동시에 구조자와 피구조자 상호 간의 구조료의 결정과 분배에 관한 형평성을 도모함으로써 해난구조에 관한 공익과 사익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된다.¹⁴⁾

한편 협의의 해난구조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사무관리설 등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국내의 통설적 견해는 상법상 협의의 해난구조는 상법상 특수한 법률요건의 하나인 사실이라고 해석한다.¹⁵⁾

2. 해난구조에 관한 입법 연혁

협의의 해난구조에 관한 현행 법제상 인명구조에 대한 보수지급체계의 정당성과 입법론을 논하기 위해서는, 해난구조에 관한 국내외 입법의 연혁과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¹⁶⁾

해난구조에 관한 법적 체계의 확립은 고대 로마시대로부터 중세 · 근대에 이르기까지 해상교역이 발달한 국가들의 입법론적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다. 특히 로마시대로부터 유럽의 중세시대를 거치는 동안 해상에서 조난당한 선박이나 적하 등의 물건은 인도적 차원의 구조 내지 구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전리품 내지 약탈(embezzlement)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¹⁷⁾ 위와 같은 악습을 제거하고자 각국은 조난선박 등을 약탈한 자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구조한 자에 대해 구조한 물건에 대한 일정한 경제적 보상에 관한 권리를 제공하는 유인책을 시행하였으며, 구

14) 임동철, 앞의 논문, 9-10쪽.

15) 위의 논문, 9쪽; 박성일, “해난구조법상 구조료와 ‘No cure, No pay’ 원칙의 변화”, 한국해법학회지 제18권 제1호(1996. 4.), 한국해법학회, 128-129쪽; 최종현, 『해상법상론』, 제2판, 박영사, 2014, 551쪽.

16) 해난구조와 구조료청구권의 연혁적 고찰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박성일, 위의 논문, 145-149쪽 참조.

17) 이균성, 『신 해상법대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1004쪽.

조자의 구조물에 관한 이러한 권리는 로마시대로부터 중세 비잔티움과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들의 법제에서도 발견된다.¹⁸⁾

구조자에 대한 위와 같은 경제적 보상에 관한 권리의 인정은, 구조자의 자발적 구조행위로 인해 선박소유자 등은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는다는 점과 해난구조의 경우 구조행위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구조자(salvor)와 물건의 피구조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3. 인명구조의 의의

해난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연혁적 고찰 및 그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종래 해난구조에 관한 법리는 해상에서의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를 통한 구조자와 피구조자 상호 간의 경제적 형평의 제고와 해난구조의 장려라고 하는 공익의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위와 같은 물건의 구조에 반해, 해상에서의 인명의 구조에 관해서는 구조자는 피구조자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보상에 관한 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으며,¹⁹⁾ 인명만의 구조자(a pure life salvor)는 선박 등의 물건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²⁰⁾

인명만의 구조의 경우에 보상청구권을 부인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인도주의적 취지에서 행하여진 인명구조와 보수의 지급은 상용되지 않는다거나, 피구조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에 따른 구조료의 상이함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구조대상인 인명의 가치산정의 곤란함 등을 들고 있다.²¹⁾

한편 인명만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보상청구권이 부인되는데 반해,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10년 해난구조협약 및 1989년 해난구조협약과 우리 상법은 선박 등 물건과 함께 인명을 구조하는 경우(a life-property salvage)나, 동일한 해난구조에 있어 일부의 사람은 물건의 구조를 하고

18) 위의 책, 1004쪽; Thomas J. Schoenbaum, *Admiralty and Maritime Law*, 3rd Ed., West Group, St. Paul, MN, 2001, p. 834.

19) 1910년 해난구조협약 제9조 제1항; 1989년 해난구조협약 제16조 제1항.

20) Thomas J. Schoenbaum, *op. cit.*, p. 860.

21) 박성일, 앞의 논문, 143쪽; 이균성, 앞의 책, 1014쪽; 최종현, 앞의 책, 556쪽.

다른 일부의 사람은 인명의 구조를 한 경우(an independent salvage)에는 인명구조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수를 인정한다.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의 근거에는, 구조에 대한 보수는 구조된 재산으로 변제한다는 논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²⁾ 그러나 인명구조를 단순한 도덕적 의무로 규정한다든가, 인명구조와 관련한 보상체계를 선박 등의 물건의 보상체계와 동일한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²³⁾

4. 상법상 해난구조의 요건과 보상체계

상법상 인명구조는 기술(既述)한 바와 같이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명구조에 관한 보수체계를 논하기 앞서, 논의의 편의상 상법상 해난구조의 요건과 보수체계 일반에 관한 간략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1) 상법상 해난구조의 요건

상법 제882조는 해난구조의 요건에 관해,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상 협의의 해난구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②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③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하여, ④ 그 결과가 있어야 한다.

1) 구조의 대상(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

상법상 해난구조는 항해선 내지 적하 등의 물건이 그 대상이지만, 항해선(seagoing vessels)과 내수항행선(vessels of inland navigation) 간의 구조의

22) 권오, “해난 선박의 구조와 구조비 보상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4호 (2014. 12.), 한국관세학회, 249쪽.

23) 임동철, 앞의 논문, 24-26쪽; 신창훈, 앞의 논문, 92쪽.

경우에도 상법이 적용된다. 다만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의 경우에는 상법의 해난구조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법의 해난구조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²⁴⁾

한편 적하 및 그 밖의 물건에는 선박장비, 선원과 여객의 수하물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물건은 해난구조 시 반드시 선박 위에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해난구조 현장 부근에 표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난구조의 대상이 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²⁵⁾

2) 어떠한 수면에서의 위난

상법상 해난구조는 “어떠한 수면”에서 발생한 것이면 무방하다. 상법의 위와 같은 규정은 1989년 해난구조협약 제1조(a)의 “항행할 수 있는 어떠한 수역(in navigable waters or in any other waters whatsoever)”를 국내법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해상이든 하천 등의 내수면이든 어떠한 수면에서 발생한 위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²⁶⁾

한편 상법상 위난이라 함은 선박 또는 적하 그 밖의 물건이 다른 사람의 구조 내지 구원이 없으면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에 처한 상황을 말한다.²⁷⁾ 이 때 선박 등에 대한 위험은 급박하거나 외부의 조력이 없으면 선박 등이 멸실 ·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일 필요는 없고 외부의 조력 없이 자력으로 항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면 충분하다.²⁸⁾

3) 의무 없는 구조

해난구조는, 구조자가 구조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구조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구조의무가 없다는 의미는 구조자와 피구조자 간에 구조에 관한 사법(私法)상 구조의무가 없다는 구조의 자발성

24) 최종현, 앞의 책, 555쪽.

25) 위의 책, 555면. 다만 이균성, 앞의 책, 1014면은 적하의 재선적(再船積)을 포기하고 육상에 방치된 물건은 표류물로서 상법상 해난구조의 대상이 아니라 후술하는 수상구조법상 표류물에 해당한다고 본다.

26) 박용섭, 앞의 논문, 11쪽.

27) 위의 논문, 8쪽; 최종현, 앞의 책, 553쪽.

28) 권오, 앞의 논문, 246쪽; 박성일, 앞의 논문, 130쪽.

내지 임의성을 의미한다.²⁹⁾

한편 구조의 자발성이란 구조에 관한 사법적 의무가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박충돌의 경우에 선장이 상대선박이나 그 적하 등을 구조하는 경우와 같이 공법상 구조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구조행위³⁰⁾도 해난구조에 해당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³¹⁾

4) 구조의 성공

협의를 해난구조를 관통하는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상 구조료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구조가 성공하여야 한다. 구조의 성공이란 선박 등의 피구조물이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뜻하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일단 안전한 상태로 구조된 구조물이 별개의 위험에 의해 멸실 · 훼손된 경우에도 해난구조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³²⁾

(2) 상법상 구조료청구권³³⁾

1) 보수청구권

선박소유자와 그 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는, 구조료청구를 부인하는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³⁴⁾ 그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29) 임동철, 앞의 논문, 9쪽.

30) 대표적으로 선원법 제12조(선박 충돌 시의 조치)는 「선박이 서로 충돌하였을 때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소유자·선적항·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충돌선박의 선장에게 인명과 선박의 구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1) 이균성, 앞의 책, 1013쪽; 최종현, 앞의 책, 557쪽.

32) 이균성, 위의 책, 1016쪽; 최종현, 위의 책, 557-558쪽.

33) 상법상 구조료란 해난구조에 대한 보수(remuneration 또는 reward)와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special compensation) 통칭하는 용어이다(동 법 제886조).

34) 상법 제892조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 구조 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③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④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에 대해서는 구조료청구권이 부인된다.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후술하는 특별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886조). 협의의 해난구조의 경우는 구조에 관한 약정 없이 구조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구조의 보수액에 관해서는 구조완료 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보수액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상법 제883조).

한편 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하고(상법 제884조 제1항), 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는 때에는 구조의 보수액은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동 조 제2항 전문). 이러한 보수에는 구조자가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후술하는 특별보상청구권은 논외로 하더라도, 구조자는 원칙적으로 구조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³⁵⁾

2) 특별보상청구권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의 성공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규모 유류오염사고의 발생이나 대형 해난사고의 발생 시, 구조자의 구조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³⁶⁾ 이에 따라 해난구조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는 선박 또는 그 적하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을 수정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구조의 성공 여부 및 구조목적물의 가액에 상관없이 구조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으며,³⁷⁾ 1989년 해난구조협약과 우리 상법도 이러한 예외를 입법화하였다.³⁸⁾

35) 최종현, 앞의 책, 558-559쪽.

36) 박성일, 앞의 논문, 126쪽.

37) 최초로 불성공 - 무보수 원칙에 수정을 가한 것은 1980년 로이드 해난구조표준약관(Lloyd's Standard Form of Salvage Agreement. LOF 1980)이다.

선박 또는 그 적하로 인하여 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손해의 경감 또는 방지의 효과를 수반하는 구조작업에 종사한 구조자는 구조의 성공 여부 등에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885조 제1항).³⁹⁾ 한편 구조작업으로 인하여 환경손해가 실제로 감경 또는 방지된 때에는 구조자는 보상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보수의 결정에 관한 상법 제883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증액 여부 및 그 금액을 정한다(동 조 제3항).

5. 인명구조의 보상체계

한편 상법상 인명구조는 ①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소위 ‘a pure life salvage’), ② 물건구조와 함께 인명구조도 한 경우(소위 ‘a life-property salvage’), 그리고 ③ 구조작업 수행 시에 일부의 사람은 물건구조에 종사하고, 다른 일부의 사람은 인명구조에 종사한 경우(소위 ‘an independent salvage’)로 대별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인명구조를 위의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1) 인명만의 구조의 경우

전통적인 해난구조의 법리에 따를 경우, 인명만의 구조자는 피구조자는 물론이고 물건의 구조자에 대해서도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이러한 법리는 1910년 해난구조협약과 1989년 해난구조협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1910년 해난구조협약 제9조⁴⁰⁾ 및 1989년 해

38) 박성일, 앞의 논문, 126-127쪽. 우리나라는 2007년 상법개정 시 1989년 해난구조협약 제14조를 수용하여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을 규정하였다.

39) 이 때 특별보상액은 상법 제884조에서 정한 보수의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법 제885조 제1항.

40) ARTICLE 9

No remuneration is due from the persons whose lives are saved, but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laws on this subject.

Salvors of human life who have taken part in the services rendered on the occasion of the accident, giving rise to salvage or assistance, are entitled to a fair share of the

난구조협약 제16조 제1항41)에서는 「생명의 구조를 받은 자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인명구조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협약들에 따를 경우 원칙적으로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는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각국은 인명만의 구조에 관한 별도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인명만의 구조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연방법원은 인명만의 구조자에 대해서도 부상 또는 상병 중인 피구조자에 대한 구조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준계약적 법리(a quasi-contract basis)⁴²⁾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인명만의 구조자에 대한 보상을 부인하는 국제협약의 원칙을 완화하고 있다.⁴³⁾

한편 상법상 인명만의 구조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은 국가의 가장 본원적 의무라고 볼 것이므로 국가는 해난구조를 당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시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⁴⁴⁾ 따라서 해상에서 인명을 구조한 자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의 제공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론으로서, 국고 또는 관련업계의 출연(出捐) 등에 의한 구조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인명만의 구조의 경우에도 구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⁴⁵⁾

remuneration awarded to the salvors of the vessel, her cargo, and accessories.

41) ARTICLE 16 (Salvage of persons)

1. No remuneration is due from persons whose lives are saved, but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national law on this subject.

42) 미국법상 “Quasi-contract” 또는 “implied-in-law contract”라 함은,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나 이러한 관계로 인해 당사자 중 일방이 부당한 이득(enrichment)을 취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형평과 정의의 차원에서 법률에 의해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경제적 혜택 등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된 의무를 말한다. Bryan A. Garner, *Black's Law Dictionary*, 3rd Pocket Edition, Thomson West, St. Paul, MN, 2006, p. 144, 586.

43) Thomas J. Schoenbaum, *op. cit.*, p. 861. *Peninsular & Oriental Steam Nav. Co. v. Overseas Oil Carriers, Inc.*, 553 F.2d 830, 1977 A.M.C 283 (2d Cir.1977); *In the Matter of the Complaint of Ta Chi Navigation (Panama) Corp.*, 583 F.Supp. 1322, 1985 A.M.C 1367 (D.D.N.Y.1984).

44) 김승대, 『헌법학 강론』, 제2판, 법문사 2012, 165-166쪽.

(2) 동일한 자가 인명구조와 함께 물건구조에 종사한 경우

동일한 자가 물건구조와 함께 인명구조를 한 경우, 구조자는 물건의 피구조자에 대해 재산구조에 대한 보수와 함께 인명구조에 대한 보수도 청구할 수 있다.⁴⁶⁾ 이 경우 구조자의 보수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박 등 물건구조가 성공하여야 한다.⁴⁷⁾ 다만 이 때 인명구조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요건은 물건구조의 성공일 뿐 인명구조의 성공여부는 그 요건이 아니므로, 구조자는 인명구조에 종사하면 족하고 반드시 인명구조에 성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⁴⁸⁾

한편 인명구조와 물건구조를 같이 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건구조에 성공하여야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위 1989년 해난구조 협약 제14조 제1항⁴⁹⁾에 따르면 환경손해방지작업에 종사한 자는 환경손해방지작업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환경손해방지작업과 동시에 인명구조에도 종사한 자는 환경손해방지작업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인명구조에 대해서는 구조료의 증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상법은 1989년 해난구조협약 제16조와 달리 동일한 자가 인명구조와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동시에 종사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상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1989년 해난구조협약과 달리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상법상으로도 환경손해방지작업과 동시에 인명구조에도 종사한 자는 환경손해방지작업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인명구조에 대해서는 구

45) 임동철, 앞의 논문, 27-28쪽; 이균성, 앞의 책, 1014쪽; 편집대표 손주찬 · 정동윤, 『주식 상법 (8)』, 제1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666쪽.

46) 최종현, 앞의 책, 559쪽.

47) 임동철, 앞의 논문, 11쪽.

48) 편집대표 손주찬 · 정동윤, 앞의 책, 665쪽.

49) ARTICLE 14 (Special compensation)

1. If the salvor has carried out salvage operations in respect of a vessel which by itself or its cargo threatened damage to the environment and has failed to earn a reward under article 13 at least equivalent to the special compensation assessabl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he shall be entitled to special compensation from the owner of that vessel equivalent to his expenses as herein defined.

조료의 증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동일한 자가 인명구조와 물건구조업무에 종사한 경우, 구조자는 물건의 피구조자에 대해 물건구조에 대한 보수에 더해 인명구조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⁵⁰⁾ 물건의 피구조자가 물건구조에 대한 보수에 더해 인명구조의 보수까지 부담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통설적 견해는 인명과 선박, 적하 등 재산이 위난에 조우한 경우 인명구조자가 인명구조에 종사함으로써 재산구조를 촉진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인명구조도 넓은 의미에서는 물건구조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본다.⁵¹⁾

(3) 동일한 위난에 즈음하여 일부의 자는 인명구조에, 다른 일부의 자는 물건구조에 각 종사한 경우

해난구조에 있어 일부의 구조자는 인명을 구조하고 다른 구조자는 물건을 구조한 경우, 인명의 구조자가 구조된 물건으로부터 보수를 받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인이 인명과 재산을 동시에 구조한 경우와 유사하고, 자신이 직접 물건을 구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인명만의 구조와 유사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⁵²⁾

이에 관해 상법 제888조 제2항은 「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10년 해난구조협약 제9조 제2문 및 1989년 해난구조협약 제16조 제2항⁵³⁾도 인명구조에 종사한 자가 해난구조가 이루어진 사고에 즈음하여 물건구조나 환경손해방지작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인명구조자는 물건구조자에 대해 공정한 보수의 분배(a fair share of the payment awarded)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⁴⁾

50) 최종현, 앞의 책, 559쪽; 편집대표 손주찬·정동윤, 앞의 책, 665쪽.

51) 편집대표 손주찬·정동윤, 앞의 책, 665쪽.

52) 임동철, 앞의 논문, 17쪽.

53) ARTICLE 16 (Salvage of persons)

2. A salvor of human life, who has taken part in the services rendered on the occasion of the accident giving rise to salvage, is entitled to a fair share of the payment awarded to the salvor for salvaging the vessel or other property or preventing or minimizing damage to the environment.

상법 제882조 제2항이 인명구조자에 대해 물건 등의 구조자에 대한 구조료 배분 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는, 인명과 선박 등의 물건이 공동의 위난에 처한 상황에서 구조자가 인명보다는 물건의 구조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해난구조의 전통적 법리의 맹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다.⁵⁵⁾

인명구조자가 구조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일인이 인명과 물건구조에 종사한 경우와 동일하게, (환경손해방지작업에 종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구조가 성공하여야 한다.⁵⁶⁾ 다만 인명구조자는 자신이 직접 물건구조에 종사할 필요는 없지만, 구조료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구조가 행해진 것과 동일한 기회(on the same occasion)에 인명구조를 행하여야 한다.⁵⁷⁾

한편 상법상 인명구조자는,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의 구조료의 분배비율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데(동 법 제882조, 제883조), 이 때 인명구조자의 구조료청구권이 물건구조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인지 아니면 물건구조자가 받는 구조료에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인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1910년 해난구조협약 제9조와 1989년 해난구조협약 제16조 제2항은, “인명구조자는 물건 등의 구조자에 대해 지급된 구조료에 대해 자신의 정당한 몫을 청구할 수 있다(A salvor of human life ... is entitled to a fair share of the payment awarded to the salvor ...)”라고 규정하여, 인명구조자는 물건구조자가 받은 구조료에서 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통설적 견해는 인명구조자는 물건 등의 피구조자에 대해 직접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⁵⁸⁾

54) 1910년 해난구조협약 제9조 제2문과 1989년 해난구조협약 제16조 제2항은 그 문구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1989년 협약은 물건구조자에 더해 환경손해방지작업에 종사한 자도 인명구조자에 대한 구조료 분배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상이하하다.

55) Thomas J. Schoenbaum, *op. cit.*, p. 861.

56) Geoffrey Brice, *Maritime Law of Salvage*, 3rd Ed., Sweet & Maxwell, London, 1999, p. 187; Mitchell McInnes, "Life Rescue in Maritime Law", *JMLC*, Vol. 25 No 3 (1994), p. 464.

57) Mitchell McInnes, *Ibid.*, p. 465.

58) 임동철, 앞의 논문, 23쪽; 편집대표 손주찬 · 정동윤, 앞의 책, 665-666면; 이균성, 앞의 책, 1021쪽; 최중현, 앞의 책, 559쪽.

6. 상법상 인명구조의 보수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상법상 인명구조의 보수체계는 ① 물건구조에 부수한 인명구조에 대해서 일정한 구조료청구권을 인정하고, ② 환경손해방지작업에 종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명구조료는 구조된 물건의 가액에 제한을 받으며, ③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명구조의 보수체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물건구조가 병행되지 않은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리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인명만의 구조에 대한 보상부인의 근거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지만, 아무런 경제적 대가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상위험을 무릅쓰고 인도적 차원에서 인명구조에 종사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둘째, 인명구조와 물건구조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인명구조자에 대해서도 구조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인명구조자의 구조료청구권은 물건구조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물건구조자가 인명구조까지 한 경우에는 구조료의 할증사유가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물건구조의 성공여부가 인명구조료의 할증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구조자는 물건과 인명이 동시에 위난에 처한 상황에서 물건의 구조를 우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극단적인 예로서, 가축운반선이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경우, 구조자는 가축과 사람 중에서 가축을 먼저 구조한 후 사람의 구조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만을 구조한 경우에는 물건을 구조한 것이 되어 구조료청구가 가능하지만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는 아무런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물건구조의 성공이 인명구조료청구의 전제라는 점에서, 상법의 해석상 인명구조료도 구조된 물건의 가액에 제한된다. 그러나 구조물의 가액도 천차만별이고 구조물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인명구조료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연 인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 물론 피구조자의 보유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명구조료가 직접적 영

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피구조자의 구조에 의해 경제적 이득을 보는 자들(선박소유자 내지 보험자 등)이 적절한 금전적 부담을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⁵⁹⁾

특히 인명구조에 대한 아무런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인명만의 구조의 법리적 문제점을 감안하여, 유력한 견해는 인명만의 구조의 경우에도 적절한 구조료를 지급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⁶⁰⁾ 국내 다수의 견해는 이러한 방안으로서 국가 등에 의한 기금의 확립을 통한 인명구조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⁶¹⁾

해난구조를 당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시행할 의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점에서, 인명구조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확립할 의무를 국가는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인명구조자에 대한 보상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해상에서의 인명에 관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보험자와 해상여객운송인, 그리고 여객 본인 등으로부터 금원을 각출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 다만 이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험자 등이 기금을 각출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확보에 대한 일반적이고 주된 책임자라는 점에서 재정을 통한 기금에의 각출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위와 같은 기금 등을 통한 인명구조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확립과 별개로, 수상구조법은 수난구조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자에게 일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수상구조법상 수난구조는 선박 등의 물건뿐만 아니라 인명도 그 대상이므로, 동 법상 인명을 구조한 자에 대한 보상체계는 상법상 인명구조의 맹점을 보완해 줄 대안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수상구조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보상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59) 임동철, 위의 논문, 25쪽.

60) 위의 논문, 27-28쪽.

61) 위의 논문, 27-28쪽; 편집대표 손주찬 · 정동윤, 앞의 책, 666쪽; 이균성, 앞의 책, 1014쪽.

Ⅲ. 수상구조법상 인명구조의 의의와 보상체계

1. 수난구조종사명령의 의의

(1) 수난구조의 의의

수상구조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⁶²⁾ 수상구조법은 수난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행정법규로서, 상법상 해난구조와 수상구조법상 수난구조는 그 법적 근거가 상이하지만 양 법률 모두가항수역에서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여 공익과 사익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양 법률의 적용이 경합할 소지가 있다.⁶³⁾

한편 수상구조법상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①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②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동 조 제5호)는 점을 감안할 때, 수난이란 수상에서의 사람과 선박 등의 물건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⁶⁴⁾

(2) 수난구조업무 종사명령의 의의와 법적 성질

수상구조법상 수난구조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동 법 제2조 제4호).

구조본부의 장 등은 수난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2) 수상구조법은 구 수난구조법을 대체하는 입법으로서 법률 제13440호로 개정되어 2016. 7. 25.부터 시행되고 있다.

63) 박용섭, 앞의 논문, 7-8쪽.

64) 박수철, 「수난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축산농림위원회, 2014. 4. 4쪽.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제29조 제1항),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등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동 조 제2항). 이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수난구호업무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 등 물건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여 구호업무에 종사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동 법 제45조).

이 때 수난구호종사명령의 수명자인 사람 또는 단체에는 수상구조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일정한 자⁶⁵⁾를 제외하고는 그 제한이 없지만, 동 법상 수난구호를 직무로 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과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⁶⁶⁾ 다만 수상구조법상 구호업무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그 노무에 대한 보수와 손실보상비용 등(제39조 제2항)을 수난구호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수난구호종사명령은 구조본부의 장 등이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나 단체는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할 작위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강학상 하명의 일종이라고 본다.⁶⁷⁾

65) 수상구조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수난구호종사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며, 동 법 시행령 제29조는 14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난구호종사명령의 수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66) 수상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참조.

67) 장은혜,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15-21-6, 한국법제연구원, 9쪽; 정명운,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의 법적 한계해소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16-08, 한국법제연구원, 2016. 11., 19-20쪽;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17판, 박영사, 2009, 323-324쪽..

2. 수난구조종사명령의 요건

(1) 수난구조를 위해 부득이할 것

수난구조종사명령의 발령은 수난구조를 위해 부득이하야 한다. 수난구조법상 조난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관할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 등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 수난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수상구조법 제16조 제1항), 구조본부의 장 등은 수난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난구조협력기관의 장, 수난구조민간단체에게 소속 구조지원요원 및 선박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구조활동(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난구조협력기관의 장과 수난구조민간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 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3항).

따라서 수난구조종사명령은 수상구조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 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 의한 수난구조활동만으로는 수난구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발령하여야 한다.⁶⁸⁾ 다만 수난구조종사명령 발령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수난구조종사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가 따른다는 점에서, 수난구조종사명령의 합목적성 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난구조종사명령은 수난구조를 위해 부득이한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수난구조종사명령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업무에 종사할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난구조종사명령에 응해 구조업무에 종사한 사람과 단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68) 장은혜, 앞의 자료, 7-8쪽.

3. 수상구조법상 인명구조의 보상체계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이 적용되어 재산의 구조가 성공하지 못하는 한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상법상 해난구조와 달리, 수난구조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사람과 단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수상구조법 제29조 제3항). 또한 수난구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의사상자등에우밋지원에관한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함.)」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동 법 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조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동 법 제7항). 또한 수난구조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조에 종사한 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부터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승무원의 수난구조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동 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제2호).⁶⁹⁾

한편 수난구조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하고(수상구조법 제41조),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수난구조비용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동 법 제40조 제1항).

69) 동 법상 ① 구조된 선박 등의 선장등 및 선원 등,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조난을 야기한 자, ③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④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에 대해서는 수난구조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동 법 제39조 제1항).

4. 해난구조료청구권과 수난구호비용청구권의 경합과 조정

(1) 해난구조료청구권과 수난구호비용청구권의 경합

협회의 해난구조는, 구조자가 구조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구조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하지만, 구조자에게 구조에 관한 공법상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해난구조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⁷⁰⁾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의 조난사고가 상법상 해난구조의 구성요건과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해난구조와 수난구호가 경합할 소지가 있다.

수상구조법상 구조비용청구권은 국가기관의 공법상 명령에 의하여 제공된 인명구조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구조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료청구권과는 성질이 다르므로,⁷¹⁾ 구호업무종사자는 해난구조와 수난구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양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2) 양 청구권의 조정

인명구조자의 해난구조료청구권과 수난구호비용청구권의 경합은 인명구조의 양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인명구조에 관한 세 가지 양태에 따라 양 청구권의 경합여부와 조정방안에 관해 논의해 본다.

1) 인명만의 구조의 경우

인명만의 구조의 경우에는, 상법상 구조료청구권이 부인되므로 이 경우 인명구조자는 수상구조법에 따라 수난구호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70) 이균성, 앞의 책, 1013면; 최종현, 앞의 책, 557면.

71) 임동철, 앞의 논문, 23면.

2) 동일인이 인명구조와 물건구조를 한 경우

동일인이 인명구조와 물건구조를 하고 물건구조에 성공한 경우, 구조자는 인명구조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동일인이 인명구조와 환경손해방지작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구조의 성공여부에 불문하고 인명구조에 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기술하였다.

이 때 구조자 구조행위가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수난구호업무종사자는 동 법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조자는 상법상 구조료청구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청구를 중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관한 상법과 수상구조법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수상구조법상 구조비용청구권은 국가기관의 공법상 명령에 의하여 제공된 인명구조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구조의 임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료청구권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호업무종사자는 해난구조와 수난구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양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 한 번의 구조행위에 대해 구조자는 상법과 수상구조법에 따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보상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보상을 통한 구조의 장려 및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 기본이념과 수상구조법의 목적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수상구조법상 인명구조자에 대한 수난구호비용부담의 궁극적 주체는 조난선박 등의 선장이라는 점(동 법 제40조 제2항)에서, 조난선박의 소유자 등은 선박의 조난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상법상 해난구조료와 수난구호법상 수난구호비용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

사건으로는, 하나의 구조작업을 시행한 구조자가 상법 제88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에서 정한 특별보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동 법 제882조에서 정한 해난구조의 보수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구조료로 청구할 수 있다(동 법 제885조 제5항)는 점을 감안할 때, 하나의 구조작업이 상법상 인명과 물건

의 해난구조와 수상구조법상 수난구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조자는 그 중 큰 금액을 해난구조료 또는 수난구조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일부의 자는 인명구조를, 다른 일부의 자는 물건구조에 종사한 경우

물건구조가 성공한 경우 인명구조자는 물건 등의 피구조자에 대해 직접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인명의 해난구조행위가 수상구조법상 수난구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명구조자는 물건피구조자에 대한 구조료청구권과 함께 수상구조법상 수난구조비용청구권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명구조자에 대한 구조료지급의무자는 피구조물의 소유자 등이고, 수상구조법상 수난구조비용부담의 주체도 조난선박 등의 선장 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하나의 구조작업이 상법상 인명과 물건의 해난구조와 수상구조법상 수난구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조자는 그 중 큰 금액을 해난구조료 또는 수난구조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수상구조법상 인명구조의 보상체계의 문제점

(1) 수상구조법과 의사상자법의 체계 정합성의 문제

수상구조법 제29조 제5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조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 등의 부담으로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법의 보상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상자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동 법 제1조), 동 법상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

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동 법 제2조 제1호)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구조행위의 자발성과 대가를 염두에 두지 않는 무상성을 본질로 한다.

이에 반해 수상구조법상 수난구조업무 종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난구조업무종사명령에 따른 강제된 행위로서 수난구조업무종사자는 국가 등의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강학상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⁷²⁾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수난구조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 노력과 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사상자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위와 같은 양 법률의 입법목적과 구조행위 내지 수난구조업무의 본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상구조법 제29조 제3항 및 제5항은 수난구조업무 종사자의 사망 내지 부상에 대해 의사상자법의 관련 규정을 일반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점은 양 법률의 법제상 체제정합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2) 수난구조업무 종사 중 부상자에 대한 치료의 문제

수상구조법과 동 법 시행령에서는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상을 당한 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의사상자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상구조법 및 동 법 시행령은 부상자의 치료에 관한 의사상자법 제11조⁷³⁾는 준용하지 않고 있다.⁷⁴⁾ 이에 따라 부상자의 치료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으나 치료의 절차와 치료비 청구 등에 관한 후

72) 강학상 공무수탁사인이라 함은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특정의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사람을 말한다. 홍정선, 앞의 책, 109면.

73) 제11조(의료급여)

①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4) 수상구조법 시행령 제30조 참조.

속 법규의 미비로 인해 수상구조법 제29조 제7항은 사문화되어 있다.⁷⁵⁾

(3) 수난구조비용 산정의 문제

수난구조법상 수난구조비용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 법 제40조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수난구조비용의 금액을 정하되 구조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위험의 정도와 시설이나 물건의 사용시간, 손실 유무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관례적인 보상액 및 임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동 법 시행령 제40조).

수상구조법상 수난구조비용액 산정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은 해난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그 액을 정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883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883조와 달리 수상구조법상 수난구조비용액 산정은 객관적 지위에 있는 법원이 아닌 수난구조명령 발령권자로서 수난구조업무의 직접적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점과 구조된 선박 등의 선장 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수난구조비용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작성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을 뿐(동 법 제42조), 수난구조비용액 산정 절차에 비용납부자인 선박소유자 등의 절차참여권이 정당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동 법 제4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외에는 해난구조와 수난구조가 경합하는 경우 구조료 등의 결정과 지급을 위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구조

75) 다만 동 법 시행령 제30조의2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료 등의 결정과 지급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IV. 결론

상법은 해난구조자에 대해 일정한 구조료를 지급함으로써 해난구조를 장려하고 구조자와 피구조자 상호 간의 경제적 이익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 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 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해난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1989년 해난구조협약과 위 협약의 주요 내용을 계수한 상법은 환경손해방지비용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였지만,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의 근거에 대해서는, 인명구조는 인도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해 피구조자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인명구조에 대한 보수액을 산정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해난구조 관련자 상호 간의 이익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해난구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⁷⁶⁾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 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인명구조에 관한 이러한 법리상 문제점을 감안하여 국내 다수의 견해는 인명만의 구조

76) 편집대표 손주찬 · 정동윤, 앞의 책, 644면; 최종현, 앞의 책, 556면.

의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출연에 기반한 기금의 설치를 통해 인명구조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명구조에 대한 경제적 보상체계의 확립에 대해서는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기금의 약출방안에 관한 관련자들의 이해와 합의의 필요성 및 기금설립에 관한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조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조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러한 수난구조비용에는 수난구조업무종사자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승무원의 수난구조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제2항). 또한 동법 제2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수난구조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사상(死傷)에 관한 위와 같은 보상규정은 해난구조활동 중 사상을 당하였으나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조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가 상법상 해난구조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조자는 위 법률들이 규정하는 구조료청구권과 수난구조비용청구권을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수난구조비용의 궁극적 부담주체가 조난선박의 선장 내지 소유자 등이라는 점과 하나의 구조작업을 시행한 구조자가 상법 제885조의 환경손해방지에 관한 특별보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제882조에서 정한 해난구조의 보수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구조료로 청구하도록 한 상법 제885조 제5조의 취지를 감안할 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조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권오, “해난 선박의 구조와 구조비 보상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 15권 제4호(2014. 12.), 한국관세학회
- 김승대, 『헌법학 강론』, 제2판, 법문사 2012
- 박성일, “해난구조법상 구조료와 ‘No cure, No pay’ 원칙의 변화”, 한국해법학회지 제18권 제1호(1996. 4.), 한국해법학회
- 박수철, 「수난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축산농림위원회, 2014. 4
- 박용섭, “해난구조법과 수난구조법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19권 제1호(1997. 1.), 한국해법학회
- 신창훈, “현행 국제법상 해상조난자에 대한 지원제공의무의 법적 성격”, 서울국제법연구 제14권 제1호(2007), 서울국제법연구원
- 이균성, 『신 해상법대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 이창재, “해난구조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21집 제2호(2017. 8.), 국제거래법학회
- 임동철, “해상인명구조와 구조료에 관하여,” 한국해법학회지 제17권 제1호(1995. 4.), 한국해법학회
- 장은혜, 「수난구조업무 종사자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15-21-6, 한국법제연구원
- 정명운, 「수난구조를 위한 종사명령의 법적 한계해소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16-08, 한국법제연구원, 2016. 11.,
- 정완용, “개정 상법상의 해난구조규정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2호(2010. 11.), 한국해법학회
- 편집대표 손주찬 · 정동윤, 『주석 상법 (8)』, 제1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 최종현, 『해상법상론』, 제2판, 박영사, 2014
- 홍정신, 『행정법원론 (상)』, 제17판, 박영사, 2009

(외국 문헌)

Bryan A. Garner, *Black's Law Dictionary*, 3rd Pocket Edition, Thomson West, St. Paul, MN, 2006

Geoffrey Brice, *Maritime Law of Salvage*, 3rd Ed., Sweet & Maxwell, London, 1999

Mitchell McInnes, "Life Rescue in Maritime Law", *JMLC*, Vol. 25 No 3 (1994)

Severance, Arthur Alan (2006) "The Duty to Render Assistance in the Satellite Age,"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6 : No. 2 , Article 5.

Thomas J. Schoenbaum, *Admiralty and Maritime Law*, 3rd Ed., West Group, St. Paul, MN, 2001

<국문초록>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 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 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 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조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조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조비용에는 수난구조업무종사자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승무원의 수난구조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조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조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조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수난구조, 해난구조, 인명구조, 수난구조종사명령, 수난구조비용보상, 무구조 - 무보수의 원칙

A Review on the Relationship of the Life Salvage and its Remuneration

Lee, Jung-won*

Under the general maritime law, a life salvor has no claim against the person saved, and a pure life salvor has no right to compensation from the owner of the ship or its cargo. This harsh rule, which treats the salvor of life less generously than the salvor of property, has been modified by international conventions, statutes, so that life salvors may expect a reward in most cases. It is, especially, unreasonable that a prerequisite of a salvage award is that at least some of the property must be saved, because life of a person can not be compared to values of goods such as vessels and cargoes. Also it is not understandable that only pure life salvors can not expect a reward for the saving of life from the owners of the property. In the meantime, according to Article 39 of the Korean Maritime Search and Rescue Act (hereunder, KMSARA), any person who has gave assistance and rescued in accordance with a governmental officer's order may get a compensation for their time and labour. The above mentioned compensation which is stemmed from the KMSARA may play a role as a compliment for the lack of enough compensation to a life salvor. This means that even though a life salvor failed to save property, he may expect a minimum compensation from the KMSARA. However,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when a life salvor is entitled to both remuneration for the salvage of life and recourse of expenditures from the KMSARA, the total remuneration shall be paid only if and to the extent that such remuneration is greater than any reward recoverable by the salvor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e KMSARA.

* Professor · Attorney at Law, School of Law, Pusan Nat'l University.

Key Words : Salvage, Salvage of life, No cure - no pay rule, Life salvor, A pure life salvage, A life-property salvage, An independent life-property salvage, Rescue and Aid at Sea